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공고 제2017-60호

도시관리계획(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58호(2011. 9. 8.)로 결정(변경)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관련 도서를 열람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열람기간: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 ☎02-2670-3540, E-mail: cityengr@ydp.go.kr)
3. 열람내용

- 1)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내 신길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	2.3~4.5	특수 도로	41	신길동 2363	신길동 2363	보행자 전용도로	-	-	-

■ 도로 신설 사유서

도로명	신 설 내 용	신 설 사 유
소로 3-1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폭원 2.3~4.5m, 연장 41m	· 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대상지 북측에 보행자전용도로 신설(영진시장에서 조성 후 영등포구에 무상제공)

- 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영진시장일대 특별계획구역(A,B) 지침(변경): 영진시장(B동)에 한함.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기반시설	· 구역면적의 10%이상 확보	· 변경없음	· 대상지 북측 기반시설(보행자전용도로) 확보
용적률	· 기준300% / 허용360%이하 · 상한=허용용적률 $\times(1+1.3\alpha)$	· 변경없음	· 주1) 내용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진행 - 시장정비계획 용적률: 450%이하
건축선	·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2m	· 상도동길 및 15m도로변: 3m · 이면도로변: 1m ~ 2m	· 2005년 건축허가(2005. 6. 9.)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침내용 변경

- 주) 1.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추진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 시행 가능
2. 건축선의 경우 2011. 9. 8. 신길재정비촉진지구내 신길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이전 종전 지구단위 계획(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05. 6. 9. 건축허가를 득한 사항임.
- 허가전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이면도로변 1~2m(신길6생활권 지구단위계획: 서고2002-152호, 2002. 4. 22.)
- ※ 상기 내용 외 기타 변경사항 없음.
4. 관계도서: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로 같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도시계획과(☎02-2670-35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